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59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손 솔 · 정춘생 · 임미애
김종민 · 김준형 · 김재원
용혜인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유해위험 시설 밀집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2025년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526개로 전체 산업단지 1,312개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 137건 중 132건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함.

특히 노후산업단지에서는 화재, 폭발, 가스 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중대사고가 빈발하여 종사자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도 조성이 오래되어 병원과 문화시설의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

전관리 및 주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시설을 정기점검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 마. 입주기업체는 사업장 내 노후설비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관리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등의 사유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점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관리권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관리권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4. “노후설비”란 20년 이상된 설비와 가동연한이 지나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또는 피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산업단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사

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노후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노후설비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설비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안전점검의 방법은 설비의 노후 정도, 유해·위험의 정도, 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주변지역”이란 노후산업단지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변 지역으로서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노후산업단지의 경계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설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설

비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점검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사항
5. 노후산업단지과 노후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7. 노후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8.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
- 2. 노후산업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입주기업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 3.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사항
- 4. 노후산업단지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5. 노후시설, 설비, 장비 등에 관한 유지보수 및 폐기 계획

6. 위험업무 외주화의 축소 및 비정규직 근로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7.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의 안전관리 지원
 8. 노후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9.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10.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중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업장 내 노후한 시설, 설비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해 노후설비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해당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공정안전보고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예방규정
4.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시설등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재해상황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노후 시설등에 관한 유지관리 및 폐기 계획과 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③ 입주기업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하청의 근로자대표나 원·하청 대표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근로자대표등”이라 한다)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체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입주기업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등은 제1항의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이에 갈음하는 자료와 그 근거가 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등은 입주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항의 계획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관리권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 및 연계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노후 시설등의 점검 실시에 관한 정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노후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의 안전점검, 같은 법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4.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5. 그 밖의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산망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절차와 제2항의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근로자대표등의 정보요청) ① 근로자대표등은 해당사업장의 안전관리·유지관리·안전점검 등 노후산업단지 내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점검 등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노후산업단지의 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후 시설등은 제8조의 안전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따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위험의 제거,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사용금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등을 이미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서의 제출로 제1항의 정기점검 중 중복되는 부분은 같음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노후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
2.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의 안전점검, 같은 법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6.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⑥ 안전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근로자대표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⑦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관리권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근로

자대표등에게 안전점검의 시행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에 참여하려는 자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절차, 방법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후 시설등의 점검) ① 제12조제1항의 정기점검시 입주기업체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노후설비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안전 점검결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후설비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근로자대표등의 의견을 거쳐 입주기업체에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점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점검결과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후설비 안전점검의 예외에 관한 사항, 노후설비의 종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시기, 절차, 방법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기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사고조사 등) ① 입주기업체는 소관 노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관리권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할 관리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노후설비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관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의 노후설비에 대한 붕괴·파손 등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입주기업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 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관리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리권자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조사위원회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근로자위원 또는 노동자대표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⑩ 조사위원회 나머지 구성과 운영,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사고조사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

제15조(주변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지원사업: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보육·교육·문화·환경·의료·복지 등에 대한 지원사업
2. 특별 지원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안전시설 개선 및 재난 발생 시 대

피도로·시설 구축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

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또는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다.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업

라.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대상,
시행기간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고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
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자 또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2. 노후산업단지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3.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의 안전 지원
4.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지원
5.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영업정지 등

제20조(영업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에 처

한다.

1. 제8조제1항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합리적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정기안전점검을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제13조제3항의 수시점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제14조제6항의 사고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필요한 현장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나 장비 등을 훼손 또는 관련자 의견청취를 조작하여 사고조사에 혼선을 준 경우

5. 제1항의 영업정지 사유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제21조(과징금) ① 공공관리주체의 장은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발생할 매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의 장은 관계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후산업 단지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 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와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의 정기안전점검을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3조제3항의 수시점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또는 근로자대표등 없이 안전점검을 진행한 자

3. 제13조제1항의 노후시설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한 자
 4. 제13조제1항의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13조제3항의 수시점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수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